■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1. 9. 24.>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주사무소의 차고지	(운행형태 :)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예정 사업 기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수수료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시·도지사 확인사항
	1. 사업계획서 1부 2. 보유한 사업용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 길이, 너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나 자동차매매계약서 1부 3.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주차 대수, 사용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차장 사용확인서, 주차비 납입증명서 또는 주차장 사용계약서(예약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제출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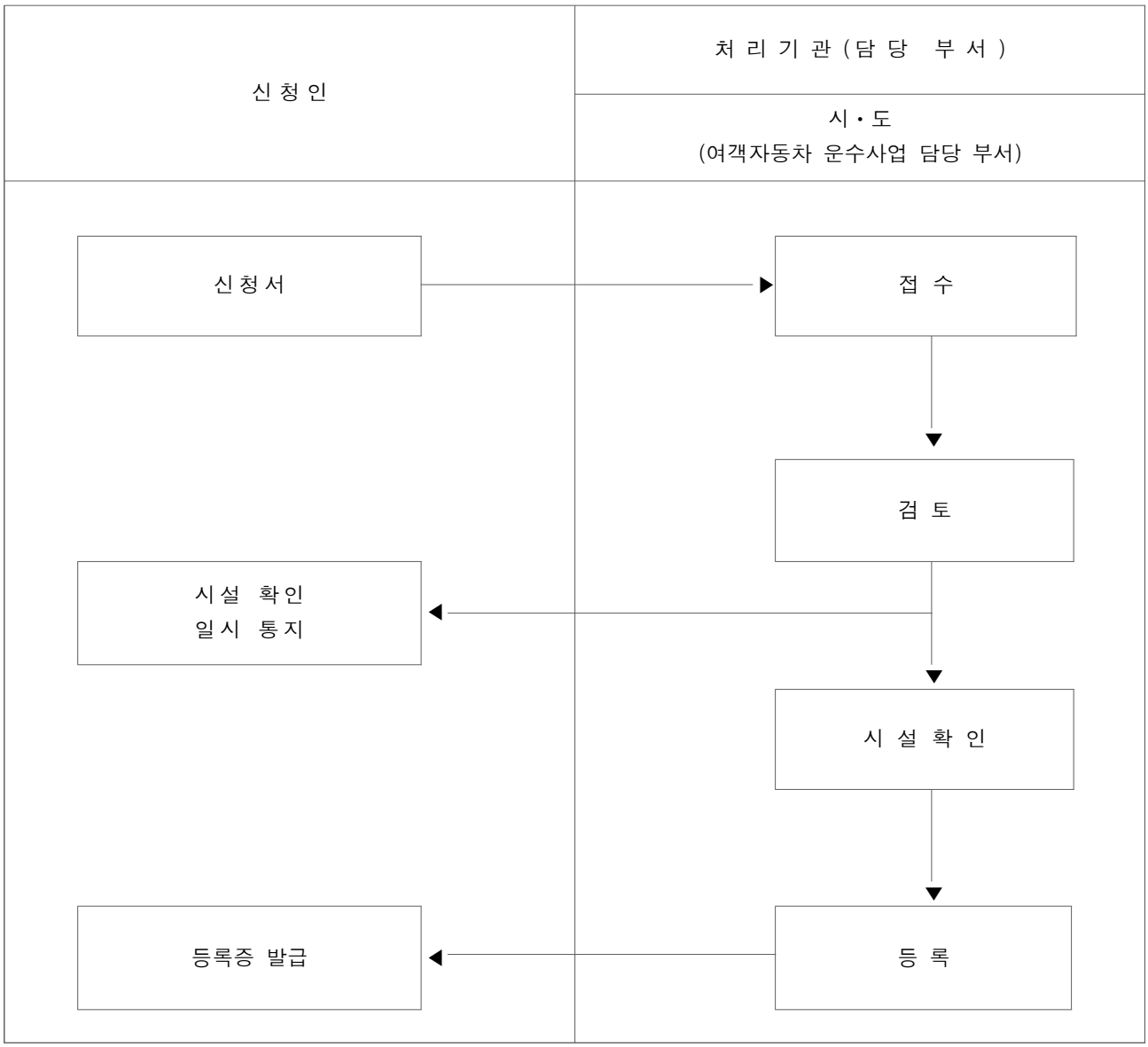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